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3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에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안 규칙 제14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 소위원회 성격에 따라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사전논의가 요구되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나. 한국예탁결제원 관련사항(안 별표 6-다.)

- '15.2월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 에서 “기타공공기관” 으로 변경·지정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별표 “6.다.(3)사장임명제청, 이상 임명”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장의 승인”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토록 조문 정비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사항(안 별표 29.)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관 변경은 대부분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 행정절차적 사항이므로 법령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 변경사항에 한하여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라.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 관련 사항(안 별표 52.)

- 「행정지도 운영규칙」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에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시행과 감독행정 작용과 관련하여 일부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의 실시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

마. 기존 위임사항 중 수정사항(안 별표 1.)

- 은행법 일부개정(‘16.3.29. 공포, 7.30.시행)에 따라 자본금감소의 신고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변경되어 조문 정비(삭제)

###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http://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별 표)

##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위 임 사 항		관
현 행	개 정 안	현 행
1. 은행감독 관련사항 가. <u>자본금감소의 신고</u> 나.~커. (생략)	1. 은행감독 관련사항 가. <삭제> 나.~커. (현행과 같음)	은행법 제10조제1항
6. 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 다. 한국예탁결제원 관련사항 (1)~(2) (생략) (3) <u>사장 임명제청, 이사 임명</u>  (4) (생략) <신설>	6. 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 다. 한국예탁결제원 관련사항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u>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장의 승인</u>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설>
29.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사항 가.~자. (생략) <신설>	29.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사항 가.~자. (현행과 같음) 차. <u>정관의 변경(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변경에 한함)</u>	<신설>

위 입 사 항		관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52.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 관련 사항 가.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의 실시 나.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사전보고 접수 다.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사전 통보 접수 라. 금융위원회 감독행정작용의 실시	<u>&lt;신 설&gt;</u>